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-10호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24일

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

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·고시

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대전시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,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대 상	항 목	별도배출허용기준
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배수설비(분류식 폐수관거)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전광역시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(900,000㎥/일)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(대전광역시)	BOD(㎎/L)	3,700
	COD(㎎/L)	988
	TOC(㎎/L)	1,980
	SS(㎎/L)	840
	T-N(㎎/L)	1,045
	T-P(㎎/L)	1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다음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.

1.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-2호 16.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별도배출허용기준